



|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 |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량규제 사업장 신고에 관하여

Q 2005년 1월에 발표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14조 3항과 시행규칙 10조를 보면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해진 3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보면 8조 내지 21조는 2007. 7.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종사업장의 총량규제 사업장신고는 2007. 7. 1일까지라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2007. 7. 1에 대기관리권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2007. 9. 30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14조 내지 제22조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반 사항을 2007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2110-7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Q 당사는 스텨을 용융 압출하여 스텨관을 제조하는 업체로 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스텨용융 압출후 물을 사용하여 냉각하여야 하나 농지전용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의 입지제한시설에 해당되므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물에 수용성 절삭유를 유분함량 5% 이상으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분함량이 5%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에 폐수라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 물에 수용성 절삭유를 섞어 유분함량이 5% 이상이라도 시행규칙 제6조 별표4(배출시설)에서 정한 일정량(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일 최대발생량이 0.01m³ 이상)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련 문의

Q 기존 목욕장(찜질방)을 운영하던 사업주와의 분쟁으로 공중위생업 지위승계가 아닌 기존사업자 폐업후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고 올해 8월부터 운영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2006년에 현 운영자인 제가 실시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신규 시설로 보아 내년부터 자가측정을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전 운영자가 2005년에 받았는데 제가 또 다시 받아야 하는지?

A 기존 목욕장(찜질방)사업주가 폐업을 하고 새 사업주가 동 건물을 인수 후 개보수하여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였다면 신규시설로 보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전문개정 2004.5.28 환경부령 제156호) 제4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적용례에 따라 2007년부터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교육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영업상 지위승계하였을 때 전임자가 교육을 받았을 경우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임자의 교육여부와 무관하게 후임자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도 알려드립니다.

소각로의 다이옥신 측정주기 문의

Q 당 사 소각로는 시간 당 730kg 용량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다이옥신을 10월 중순에 측정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12월에 1회 이상 측정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10월 내에 측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 1회로 보고 올해 연말까지만 측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시간당 소각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의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은 사용개시일로부터 12월에 1회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지난해에 측정할 날짜가 사용개시일로부터 12월이라면 그 기간 이내에 측정하여야 합니다

침출수 처리에 관한 건

Q 매립장에서 폐수와 침출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여 처리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침출수역시 종말처리장으로서의 유입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비오는 날이 적어 침출수처리장이 생물학적 처리로 운영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아 발생하는 폐수를 침출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A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제2호 나목(2)(마)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의 종말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 제2호 나목(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한 후 이송하여야 합니다.

적산전력계 부착 여부

Q 저희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 5대가 동시에 가동되며 각각의 별도로는 운영되지 않는 시스템이고 방지시설전력외 어떠한 전력도 혼합 사용되지 않는다면, 통합적으로 적산전력계 하나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동시에 운영되더라도 별도로 각각 설치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각각 설치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면 1개의 적산전력계만 설치하여도 될 것입니다.